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1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20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안전국장 김 용 보

나. 제안이유

- 수여 대상자는 관내 중증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건립 후원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거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구미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기여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예우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석성일만 사랑회 조용근 이사장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하여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명예시민증 수여 : 2022. 11. 11.(금) 10:30 사랑의쉼터* 준공식

*사랑의쉼터 :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도개면 소재, 舊 동산초등학교)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수여내용

○ 수여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조용근 (1948년생)
- 학 력 : 성균관대 상학과 명예졸업
- 이 력
 - 現) 세무법인 석성대표,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이사장, 사)석성일만사랑회** 이사장
 -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회장, 천안함재단초대이사장

** 석성일만사랑회

- (설립취지) 매달 1만원을 아껴서 1만명이 기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 (회 원) 600여 명(국세 공무원, 세무사, 회사원 등)
- (주요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건립 지원 등

- 수상경력
 - '19. 12. 02.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복지TV)
 - '21. 11. 18.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대상(한국바른언론인협회)

○ 공적사항

- 관내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건립 후원 : 408백만 원
 - 여자(1차 후원, 2020년) 남자(2차 후원, 2021년) 생활관 신축비 : 각 200백만 원
 - 물품지원 : 8백만 원
- ※ 위 시설은 학교 부지를 무상사용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의 거주 환경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중에 <석성일만사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관 개선 사업과 부합하여 생활관 2개소를 건립 후원함.
(전국 7개소 중 구미시 2개소 후원)

• 주요 사회공헌 활동 내역

- 중증장애인생활관 7개소(6개 지역, 12억원) 건립 후원

※ 1호(`14) 충남 논산, 2호(`16) 경기 용인, 3호(`17) 서울 서초,
4호(`19) 경기 수원, 5호(`20) 경북 구미, 6호(`21) 강원 양양,
7호(`22) 경북 구미

- 세무법인 석성 매출액 1% 장학기금 후원 (2005. ~)

- 2008. 미얀마 양곤시 학교 건립, 2010. 캄보디아 무료급식소 건립 등

○ 수여의 필요성

- 거주 시설 건립 후원에 대한 예우
- 명예 시민증을 통한 구미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
- 향후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 후원 필요 시 연관 기관 연계 협의를 통한 복지증진 이바지 기대

○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안)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및 시행규칙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 ○ ○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귀하를 구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경상북도 구 미 시 장 ○ ○ ○ (관인)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사 진 ○ ○ ○ 상기인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 ○ ○ 관인
--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우리 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는 인사에 대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 검토 결과,

- 수여 대상자(조용근 이사장)는 관내 중증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비까지 들여 관내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사랑의 쉼터, 도개면 소재)의 생활관 2개소 건립을 위한 후원의 물꼬를 터주어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대상)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